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

(김보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1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0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

양은숙 의원, 전홍배 의원

1. 제안이유

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
나.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다.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라. 행정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특성과 달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자치경찰사무”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여성·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2.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3.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
4.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
5.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 달성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자치경찰사무 지원)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,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,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

2. 실종예방, 청소년 비행방지, 성폭력·가정폭력·교제 폭력, 아동학대·노인학대·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교폭력 피해자보호등 여성·청소년 분야사업

3.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·관리, 안전교육·홍보, 통행 제한 및 허가, 교통법규위반 단속, 어린이통학버스 점검,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

4. 농촌지역 맞춤형 안전대책(농기계 교통사고 예방, 농번기 범죄예방 등)

5.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, 대구광역시 달성경찰서(이하 “경찰서”라 한다),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,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,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

야 한다.

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(이하 “군”라 한다)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장은 달성군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.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, 간사는 군청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(팀)장으로 한다.

제9조(행정지원 등)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2022. 11. 15. 제정, 2023. 2. 16. 시행)

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. 다만,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.

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1)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

2)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

3)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

4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의 예방

5)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.

6)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
나.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

1)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·단속

2)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

3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4)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

5) 통행 허가,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,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

6)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

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

1)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

2) 가정폭력, 아동학대 범죄

3)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

4) 「형법」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

5)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

6) 가출인 및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

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생활안전·교통·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

2. 관할 지역의 인구,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·장비 등을 고

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

3. 기관 간 협의체 구성, 상호협력·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
4.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

제15조(실무협의회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, 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」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제5조, 제6조, 제9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, 지원사업 시행, 행정 지원 및 예산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예산이 수반될것으로 판단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 지원 근거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,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원 내역 등 정량적 재정 수반요인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임.
- 조례 시행 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나, 현재로서는 예산 편성 및 지원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비용추계 산정이 불가함.

작성 자

소속 및 직위

달성군의회 의원

성명(연락처)

김보경 (☎ 2052)